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20
----------	-------

발의연월일 : 2025. 11. 25.

발 의 자 : 주철현 · 민형배 · 박균택
문대림 · 이원택 · 이병진
권향엽 · 김문수 · 황운하
위성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지역 공동체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계통이 이미 최대용량에 도달하여 추가 전력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전기설비의 이용이 제한되어 국가시책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 신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 전기설비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전사 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 2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 전 기설비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u>